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오피스텔 분양광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5.09.17.)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관련
 -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법률위반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합니다. 설령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뿐이므로 전매제한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계약자 및 분양권양수인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소송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표시부동산을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자는 전매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증거서류(대출승계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금액이 최초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행위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여의도현대마에스트로.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5.09.22.(월)	2025.09.25.(목) 16:00 이후	2025.09.26.(금) (10:00 ~ 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409호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2022-건축과-분양신고-2)로 분양신고를 한 건축물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21-건축과-건축허가-108)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488.0000㎡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지분 1,428.9783㎡
 - 건축물 연면적 : 16,684.1596㎡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16,022.3772㎡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6층 ~ 지하 2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 1층(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 지상 13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6층 ~ 지상 13층 1개동 중 오피스텔 총 162세대 중 잔여 8실
 - 주차대수 : 총 134대(자주식 65대, 기계식 69대) / 오피스텔 132대, 근린생활시설 2대
- 매도인 겸 시행위탁자 : 여의도에이치2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공사 : 현대아산 주식회사
- 분양대행사 : 골든밸류 주식회사
- 내진설계 등급 :
 - 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 나.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VII-0.204g
- 지진하중 적용계수

지역계수(Z) / 위험도계수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 (Ie)	반응수정계수 (R)	기본진동주기 (T)	내진설계범주
0.11g/2.0	0.176g	S4	1.2	지하 3.0 지상 5.0	Tx : 1.1170 Ty : 0.8102	D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VI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0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부
- 준공일 : 2025년 3월 18일
- 입주예정일 : 2025년 12월 12일(입주예정일은 잔금 납입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m ²)	계약면적(m ²)	대지지분(m ²)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25	1	25.2503	10.2307	35.4810	18.9506	54.4316	4.8545
48A	3	48.4534	19.6320	68.0854	36.3651	104.4505	9.3155
48B	2	48.2934	19.5671	67.8605	36.2449	104.1054	9.2848
48D	1	48.6490	19.7112	68.3602	36.5123	104.8725	9.3536
51A	1	51.5604	20.8908	72.4512	38.6969	111.1481	9.912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공급호실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14일 이내	입주 시
25	1	-	275,900,000	140,300,000	14,030,000	430,230,000	30,000,000	13,023,000	387,207,000
48A	3	최고	612,200,000	311,200,000	31,120,000	954,520,000	30,000,000	65,452,000	859,068,000
		최저	584,700,000	297,200,000	29,720,000	911,620,000	30,000,000	61,162,000	820,458,000
48B	2	최고	562,900,000	286,100,000	28,610,000	877,610,000	30,000,000	57,761,000	789,849,000
		최저	553,720,000	281,500,000	28,150,000	863,370,000	30,000,000	56,337,000	777,033,000
48D	1	-	621,200,000	315,800,000	31,580,000	968,580,000	30,000,000	66,858,000	871,722,000
51A	1	-	609,100,000	309,700,000	30,970,000	949,770,000	30,000,000	64,977,000	854,793,000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가격은 타입,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용 되었으며, 타입별로 상이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 분양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각종 지방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동의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은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MDF, 방재실, 재활용폐기물보관소, 부대시설, 복도, 계단, 로비, 벽체두께 등), 부대복리시설 등의 면적이 포함 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때는 분양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전에 본 사업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에,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현장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5.09.1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타입)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5.09.22.(월)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025.09.25.(목) 16:00 이후	2025.09.26.(금)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409호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 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 (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5.09.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 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09.25.(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 확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또는 당사 홈페이지 및 사업관계자 분양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구분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당첨자	2025.09.25.(금)	10:00 ~ 16:00	사업주체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409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예비입주자		16:30 ~ 20:30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에게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수협은행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잔금)	1010-2162-8990	(주)무궁화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실에서는 계약금,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 기존건물로 인한 건축사향,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배치구조 및 층,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본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4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분양광고일(2025.09.17.)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은 위「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매제한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위반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본인의 책임하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여야합니다. 설령 사업주체가 권리의무 승계 서류를 수령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단지 권리의무승계관련 신청서류를 수령하였음을 의미할뿐이므로 전매제한관련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계약자 및 분양권양수인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소송제기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금액이 최초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일 : 2025년 3월 18일
- 입주 예정일 : 2025년 12월 12일(입주 예정일은 잔금 납입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실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관련 사항

-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의도에이치2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양도함에 따라 분양대금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서 관리합니다.
-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입주시연 등은 대리사무계약의 시행사 여의도에이치2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공사도급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시공자 현대아산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시행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주체인 여의도에이치2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시행사가 부도, 금융거래정지,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회사정리법상보전처분 등 기타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분양대금채권(연체이자포함)을 신탁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 매수자는 납부한(할)분양대금 총액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시행사가 신탁사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액 상환 등 본 사업 관련 사업비로 지출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대금은 반드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단지배치 특성상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오피스텔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분양사무실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 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 환급에 대한 부분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분양 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같음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탁사, 수탁자, 시공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분양사업자와 계약자간의 합의를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 동일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조경

- 단지 내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인접 동 및 인접세대, 해당 사업지 인근 고층건물, 주변단지의 신축 등에 의해 각 세대별 층수와 향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부대복리시설, D/A, 자전거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견본주택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 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게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는 단지 내부시설이나 관계법령에 의거 단지 외부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 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장설치 등 인위적인 통제가 불가하며, 외부인 통행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부에 전기인입을 위한 수전변 설비, 근린생활시설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 등이 설치되며, 상세 위치 및 크기 등은 각 공급업체(한전, 도시가스 등)에서 지정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은 지역열원을 이용한 지역난방방식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난방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1. 일반사항

- 본 건축물은 2021년 9월 2일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이 단지 내에 함께 설치되어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호실의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시설별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와 보도, 차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대지 내 설치된 도로의 경우 유지관리의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건물의 특성상 이삿짐의 이동시 승강기만을 이용해야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되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지역열원을 이용한 지역난방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휀룸등이 위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빗물재활용을 위해 빗물집수조가 설치되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및 조리를 위한 주방시설을 포함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내 입점자가 냄새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여 인근 호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연설비인 제연덕트 급·배기구 설치로 상·하 호실간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에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구에 의해 실구획 및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 및 외부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MDF실, 방재실 포함), 스크린 골프, 피트니스센터, 미팅룸, 멀티룸, 라운지바, 중앙 홀 등)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된 곳의 상부세대는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오피스텔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등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부대복리시설에 제공된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센터 등 필요에 의한 사무공간으로 운영된 뒤 향후 주민회의실 등의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은 각 실별 냉난방을 위한 천장형 에어컨이 제공되며,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에어컨 방식이 적용됩니다. 용량은 평형에 따라 각 실별 부하량과 동시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된 기본 용량만 제공됩니다. 멀티에어컨 방식은 인근 호실과 실외기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접 호실의 실내기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실외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실내기 및 실외기의 수량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추가적인 냉난방을 위한 시설은 입점자가 별도로 공사하여야 합니다. 냉방 및 난방은 계절에 따라 관리사무실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접 호실과 공용으로 실외기를 사용함에 따라 인접 호실과 다르게 냉방 또는 난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금은 각 호실별 사용전력량에 따라 분배되며, 냉방 및 난방을 위한 공용요금(유지관리 및 기본운전을 위한 전기요금 등)이 발생합니다. 각 층 실외기실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천장형 에어컨 및 실외기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방배기팬 및 탈취시설의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 또는 냄새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점포별 동시사용량에 따라 배기 풍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배기시설, 기계장비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별 배치 차이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성, 접근성 등 사용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약할 세대의 위치 및 주변 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하주차장

- 단지 진·출입부는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부지 북측에 1개소가 위치하며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2층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위치변경이나 지정은 불가합니다.
- 지하 2층~지하 6층 주차장 중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지하 2층의 일부에만 가능하며, 오피스텔 주차는 지하 2층 일부~지하 6층에 가능합니다.
- 지하 5층~지하 6층은 기계식주차장이 적용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 구분 및 구획은 추후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종 지하에는 오피스텔의 급수, 급탕, 난방 및 배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배관 및 덕트 등의 설치공간 및 루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엘리베이터홀)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일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지하2층 2.7m(일부구간2.3m), 지하2층일부~지하4층 2.3m~2.7m입니다.
- 주차장 진출입램프 상부 세대는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 재활용(쓰레기)집적소가 설치되며 조업을 위한 차량 이동 및 주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악취,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

- 마감자재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는 설계 및 시공성에 따라 타일 또는 석재 등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의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층에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각종 옥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설치위치 지정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의 공용구간(PS, AD)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정화조 배기용 덕트의 설치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및 지붕층 등에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을 위한 실외기실 및 주방배기 탈취기실, 각종 배기팬 및 악취제거시스템(근린생활시설 주방 탈취설비) 및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는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설치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최상층에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인접세대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배연설비는 화재시 배연을 위한 설비로 공용복도 남측과 동측에 배연창이 설치되어 평상시 개폐가 불가능하며, 임의 해체, 차단 등을 금합니다.

■ 단위세대 관련

- 경량벽체로 설치된 실내 벽체는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인근세대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업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현관,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거공용면적(벽체, 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세대 내·외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동일동의 계단실 등에 의해 일부실의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 실외기는 지붕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또는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도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준공도면을 우선으로 함)
 -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또는 매립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되었으며, 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합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 타일 등 일부 마감재는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본 건물의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책임을 이행하며,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훼손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용승인 상태로 계약 호실을 인수하여야 하며 입주정일 이후 발생하는 수선유지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책임에 대해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자의 사용상, 관리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 모든 공사는 사용승인도면에서 정한 품질과 내용 한도 내에서 시공 또는 설치되며, 계약자는 사용승인도면에 의거 시공 또는 설치한 건축물 등 외에는 품질의 개선,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임의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에 관한 책임(하자보수 책임 포함)을 부담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별도)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건축, 토목	지엔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600,000,000원
	기계감리	주식회사 건일엠이씨	135,000,000원
	소방감리		
	전기감리		
	정보 통신감리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매도인 겸 시행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여의도에이치2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현대아산 주식회사	골든밸류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653-88-01965	120-86-58362	221-81-13834	811-81-0114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사업자 : (주)무궁화신탁 / 등록번호 : 120-86-58362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 인허가 사항 : / 허가번호 : 2021-건축과-신축허가-108

■ 분양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번지,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409호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대표번호(1533-4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 <http://www.여의도현대마에스트로.com>